##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40조(보수)	제40조(보수)
①・②(생 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1. C클래스 수익증권
가.(생 략)	가.(현행과 같음)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5</u>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0</u>
다. • 라.(생 략)	다.ㆍ라.(현행과 같음)
2. · 3.(생 략)	2. · 3.(현행과 같음)
<신 설>	<u>부 칙</u>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5월 31일부
	터 시행한다.